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낙태 윤리적 딜레마

조원:김금순, 이재민, 문서하



목차

01 | 낙태의 개념 및 현황

02 | 낙태죄의 개념 및 현황

03 | 베이비박스의 개념 및 현황

04 | 낙태 관련 딜레마

05 | 관련 영상

06 | 낙태에 관한 딜레마 토론

낙태의 개념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어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유산)

*태아가 달이차기 전 죽어서 저절로 나오는 자연유산,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유산이 있음

낙태의 유형

1.약물 낙태

-임신 초기(보통 10주 이내)에 약물을 복용해 낙태

2.수술 낙태

-자궁 내에서 태어나 임신 조직을 제거

임신중절술 법적 허용 조건

모자보건법 제 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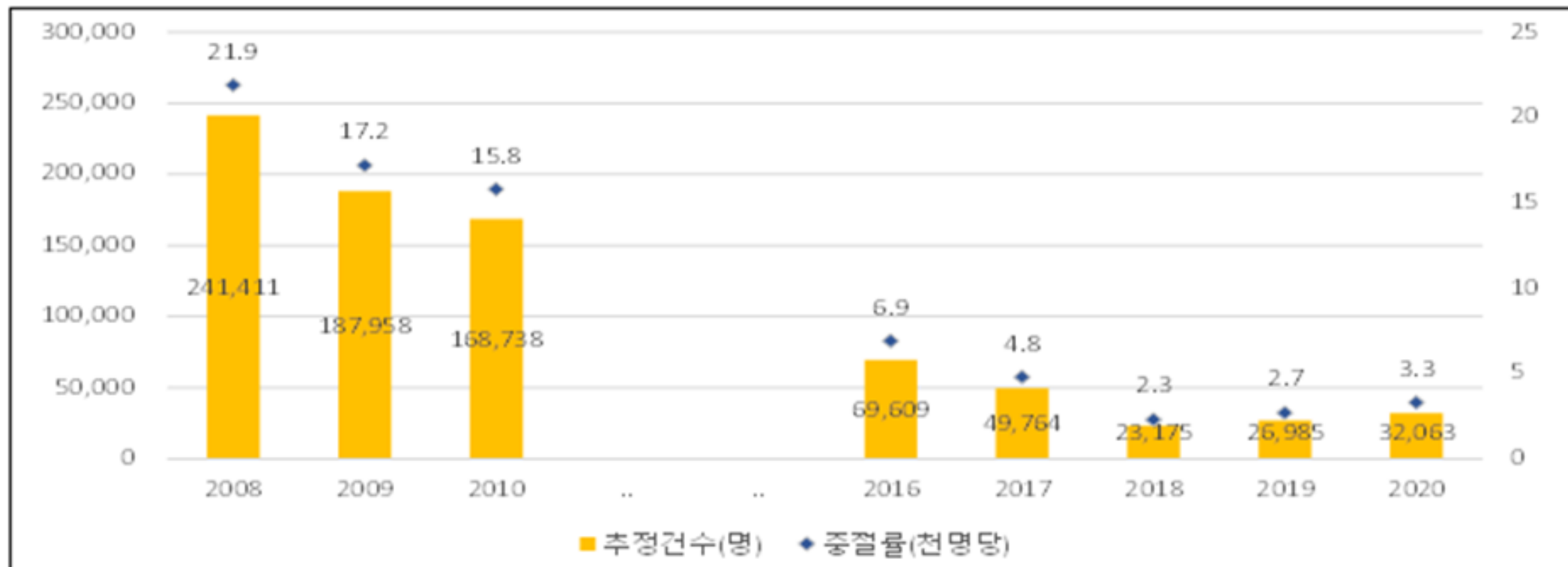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 관련 법

- 1.진료거부금지: 의료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낙태를 안 하겠다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 2.수술 동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혼자서도 수술할 수 있음.
- 3.본인 부동의 낙태: 여성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낙태를 시키려는 사람은 처벌

〈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 〉

(단위: 건, 천 명당 건)



자료: 1) 2008~2010년 수치: 손명세 외.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2) 2016~2017년 수치: 이소영 외.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2018~2020년 수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 건강 관련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인공임신중절의 지속적 감소 원인>

- ①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 증가,
- ②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 감소,
- ③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상:(만 15세~49세 여성 8,500명 대상)

조사 대상 여성 중 임신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27.0세로, 2018년 결과(만 28.4세)와 비교시 평균 연령이 약간 낮아짐.

또한 당시 혼인상태는 미혼 50.8%, 법률혼 39.0%,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로 2018년 기준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 사별 2.2%와 비교하여 인공임신중절 당시 미혼상태의 비율이 더욱 높아짐.

낙태죄 개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낙태죄 관련 법

형법 제269조(낙태)

-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의사낙태죄)

의사나 조산사 등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외에도 부모나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 가능

-헌법불합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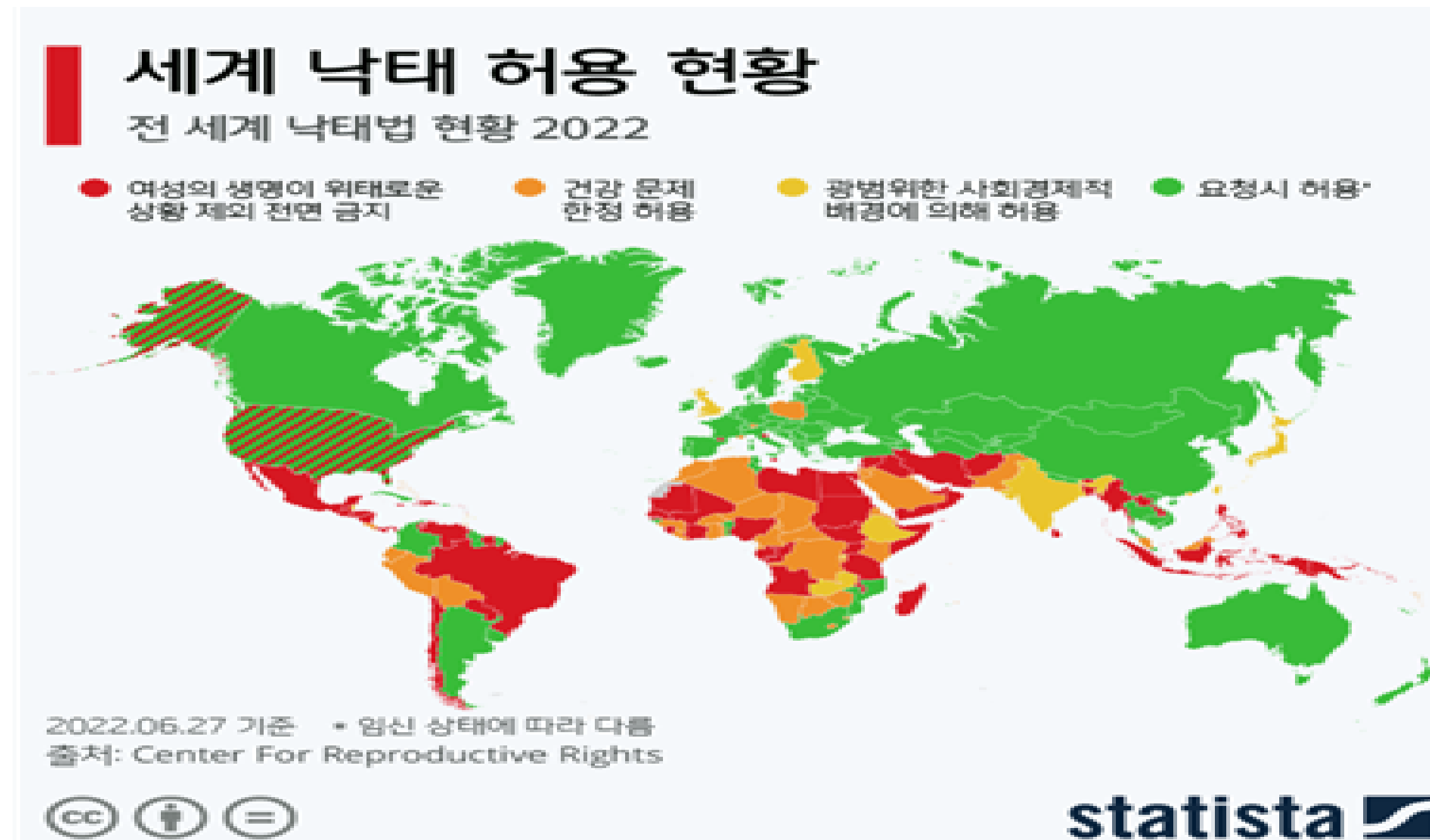
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법적 공백 상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었지만,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법적 공백 상태.

-대체 입법 지연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폐기되는 등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뉴질랜드

2020년 3월 낙태죄를 형법 처벌조항에서 삭제하고 임신 20주 안에 산모가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됨. 20주 후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할때에 낙태시술이 허용되며, 이때에는 2명의 의사가 낙태에 동의해야함.

의사 외의 자가 낙태시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됨.

| 러시아

'국민건강보호기본에 관한 법' 제 56조에 따라 태아기 재태주수 최대 12주 까지 자발적인 임신중절을 허용. 이후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의 상태가 보건부가 규정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의학적 증상 목록에 해당한다면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 가능. 자격 없는 의사의 수술, 주거지 또는 무면허 수술은 불법으로 한화 약 120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480시간의 강제노역, 2년 이하의 교정노동이 적용됨.

| 인도

형법에 따라 태아를 잃게 하는 각종 행위는 처벌 대상. 특히,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를 제외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태아를 잃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태동이 있는 태아 낙태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으로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됨.

| 일본

일본은 형법에 따라, 자기낙태, 동의낙태, 업무상낙태, 부동의낙태 등의 낙태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임신 22주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간강에 의한 임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의사에 의한 인공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음.

베이비박스 개념

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보호 장치**로, 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부모가 일정한 장치 없이 안전하게 두고 갈 수 있는 박스를 의미함.

베이비박스 진행방식

- 1.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기를 베이비박스 안에 놓으면
- 2.센서가 작동해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 3.아기는 즉시 보호자나 담당 기관에 인계됨
- 4.이후 의료 검사 및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입양 등의 절차가 이어짐

1. 영아 유기와의 관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행위 자체가 영아 유기죄(형법)와 충돌할 수 있다는 법률적 우려가 있음.

2. 입양 / 출생신고 문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거나 입양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음. 입양 특례법 등의 법률 체계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아 아동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됨.

우리나라 베이비박스 현황

2009년 12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담벼락에 베이비박스가 최초로 설치

2023년 기준 전국에 약 15개의 베이비박스가 운영중

주요 설치처: 서울 주사랑공동체 교회, 경기도 군포시 새가나안교회

베이비박스 자체는 법적 금지시설이 아님.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맡기는 행위를 아동 유기 행위로 간주하여, 아동복지법 제 10조 1항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가별 베이비박스 현황



해외 19개국에서 베이비박스가 합법적으로 운영 중.

일본, 말레이시아, 폴란드, 독일, 체코, 캐나다,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이탈리아

베이비박스의 시작으로 보는 나라이며 한 수도원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강가에 아이를 익사시키는 사건이 많아지자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작 됨.

인도, 파키스탄 등의 나라에서도 여아가 태어나면 살해하는 풍습을 없애고자 운영 됨.

-독일

출산과 육아 등 복지제도 덕분에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 수가 적은 편이지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거리에 유기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베이비박스를 없애지 않고 있음.

-프랑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익명출산제도를 적극 받아들여 모든 산부인과가 베이비박스 역할을 하고 있다.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출산에서 입양까지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

낙태에 관한 딜레마

| 찬성(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법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여성의 삶에 있어 근본적이고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여성의 인격권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

| 반대(태아의 생명권)



생명 우선론을 바탕으로 함. 생명권은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

인간으로 형성 중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

인간 생명은 수태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 또한 보호 받아야 하며, 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외에는 태아의 생명이 임산부의 다른 어떤 이익보다 우선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임.

낙태죄의 관한 딜레마

| 찬성(태아의 생명권, 사회 윤리)



-태아의 생명권: 인간으로 형성 중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

-사회윤리: 과거 노예제도처럼 합법이라는 명분 아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 되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

| 반대(여성의 자기결정권, 산모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법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산모의 건강권: 낙태의 불법화 상태에서의 불법 임신중절술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위협이 가해지는 행위가 될 수 있음.

베이비박스에 관한 딜레마

| 찬성(생명권 보호, 안전망 제공)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부모가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길거리 유기나 사망 사고를 막고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된다.

-미혼모·위기 부모의 선택권 확대: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익명으로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 반대(부모의 책임 회피, 아동 권리 침해)

-책임 회피: 부모의 양육 책임을 약화시키고, 유기 및 방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실제로 베이비박스 도입 후 유기 아동의 수가 급증했다는 연구결과 존재

-알권리: 모든 아동은 자신의 출생 배경과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베이비 박스를 통해 맡겨진 아이들은 이러한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잃을 위험이 있음.

-정체성 형성 문제: 부모의 정보의 부재는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https://www.youtube.com/live/MSjITDFy2dw?si=7AJp_gUPGcsgVzzS

[낙태에 관한 딜레마] 토론

사례: 강제적 성관계로 인한 임신에서의 낙태에 대한 딜레마

클라이언트는 결혼한지 6개월 된 25살 여성이며, 현재 임신 상태이다. 클라이언트는 남편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그로 인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후 강제적 성관계에서 임신이 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남편과의 이혼과 낙태를 원한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졸업과 동시에 가정폭력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쉼터에 취업하여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 개인적으로는 낙태합법화를 지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여성쉼터)은 낙태에 관한 논의 금지를 기관 방침으로 가지고 있으며, 생명보호를 제 1원칙으로 삼고 있다.

〈출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사법정보공개포털
3. 세계법제정보센터
4. 주사랑공동체

감사합니다.